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업무 매뉴얼

2014. 10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 ◇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

I. 공익신고 주체 및 신고 대상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 대상

-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하거나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익침해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위반행위

예시 : 무자격자 의료행위(의료법), 교량 부실시공(시설물안전법), 폐기물 불법 매립(자연환경보전법), 유사석유 판매(소비자 기본법) 등

II. 공익신고의 접수

○ 공익신고 접수 부서

- 감사담당부서(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
- 책임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실무는 청렴업무 담당자가 처리

- * 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소속직원과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
- * 실무담당자는 공익신고 방법·절차 및 제도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권익위 홈페이지 '공익신고' 링크 배너를 설치·관리

○ 공익신고의 상담 및 접수

- 공익신고 상담 및 접수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비치·활용
 -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 민원으로 접수·처리
- 신고서는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을 통해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전화는 상담만 가능
 - * 신고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 첨부
-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

-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서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작성
-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 별지 제5호서식 대표신고자 선정서 작성

○ 공익신고의 보완 요구

-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7일 기간 안에 보완 요구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자체 종결

○ 공익신고 기록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관리, 별도 장소에 보관
- *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Ⅲ. 공익신고의 처리

○ 공익신고의 송부 및 조치방안 마련

- 접수된 공익신고가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 조사기관·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14일 이내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

1.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
2. 징역·벌금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 처리하여 사본을 이송

-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 방안 마련하여 시행한 후 그 조치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

○ 공익신고의 종결

- 공익신고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중단·종결하고, 이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IV.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는 불가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 미공개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징계의 감면

-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가능

○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 안내

1.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신분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5.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시 징계의결요구 양정 기준

위 반 사 유	요 구 기 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 조사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고의
○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고의	중과실
○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고의	고의	고의
○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고의	고의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 등으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 보상금의 지급신청 기간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준용 규정 등

- 공익신고 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 이 매뉴얼에 미규정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용·처리

※ 관련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02-360-3769)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운 영 지 원 과 장 귀하

공 익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일	보상금 안내일자	담당자	비고
			송부일자	결과통보일			
201x - 00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감 사 담 당 부 서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감 사 담 당 부 서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서식 6]

20 년 월 일 접수
20 공익 제 호

접수자	센터장

공 익 신 고 기 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송부·종결 처리	20 년 월 일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	20 년 월 일	내 용	
	보상금 안내	20 년 월 일	내 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 확인	담당	감사담당관
	종 결 일 20					
보존기간	년 (20 까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 제도 취지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공포('11.3.29.), 시행('12.9.30.)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1 공익신고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로 한정하지 않음

○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 적용 대상 180개 법률의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 벌칙 대상

-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

☞ 「식품위생법」 제9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대상

- 양곡매매업자 등이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과대의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 「양곡관리법」 제21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 신고 방법 : 신고 기관 및 신고 요건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공익신고 기관 >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
- ◆ 국회의원
-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 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①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② 공익신고 처리

가. 조사기관의 처리

○ 조사의 착수

- 공익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에 착수**

○ 조사 결과의 통보

-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①형사·행정처분 등 신고사항 처리결과 및 경위·이유 ②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방향 ③보상·구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④공익신고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요지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

- 조사 결과 통보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신고내용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권익위에 통보

나. 대표자 및 국회의원 등의 공익신고 처리

○ 신고사항의 확인

-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등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
- 조치방안의 마련·시행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 조사기관 등에 송부

-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송부
-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신고사항 송부

③ 공익신고자 보호

가. 기본사항

○ 협조자 보호

- 비밀보장 등 모든 보호에 있어서 협조자는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 협조자 : ①공익신고 ②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③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나.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신변보호

○ 신변보호 조치 요구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 신변보호 조치

- 경찰관서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 결정

※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신변보호조치 해제

라. 책임감면 등

○ 형의 감경·면제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징계의 감면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감면 요구 가능
※ 징계의 감면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 규정은 무효로 됨

○ 손해배상 청구 금지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예외)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 신고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마.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 불이익조치의 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의 종류(법 제2조제6호) >

-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지급
-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업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 주의대상자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 ◆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 **공익신고의 방해 및 취소강요 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전출·전입·파견 근무 등 인사조치 요구 시 우선 고려

○ **유리한 법률 우선의 원칙**

-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바.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보호조치의 신청**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가능
- ※ 신청기간 : 불이익조치 발생일(계속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 조치 신청 불가 ⇨ 각하 사유에 해당

○ 불이익 추정의 원칙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

○ 보호조치 신청 사건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인, 불이익조치자, 참고인,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에 자료 제출·출석·진술서 제출 등을 요구

○ 화해의 권고

- 보호조치 신청 후 결정·권고 전까지 직권·관계 당사자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손해배상 등에 대해 화해 가능

※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보호조치 결정

- 신분상·근무조건상 불이익이 인정될 경우 불이익조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보호조치 결정의 종류(법 제2조제6호) >

- ◆ 원상회복
- ◆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 포함)의 지급
- ◆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 보호조치 결정의 확정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조치 결정이 확정됨(행정심판 청구 금지)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조치 권고

-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의 금지 신청
-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인정될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사전 권고

○ 조치결과의 통보

-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관련 요구나 권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사. 협조 등의 요청

○ 요청 사유

- 공익신고 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 조사·처리 및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그 밖에 관련 단체 등에 협조·원조 요청 가능

4] 공익신고자 보상구조

가. 보상금 지급

○ 신청 요건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 신청 시기
 -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또는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지급 금액
 - 최저 10만원 ~ 최고 10억원
- 보상 절차
 - 신청인, 참고인, 관계기관 등에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을 요구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급 결정
- 보상금 감액·미지급 사유
 - 공익침해행위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는 보상금 미지급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의무자 또는 공익신고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 또는 미지급
- 보상금 상환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로 인한 보상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

※ 미상환 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나. 구조금 지급

- 신청 요건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
- 지급 절차
 - 신청인·이해관계인 조사, 행정기관·관련 단체에 필요 사항 조회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결정

○ 구조금 대위 청구

- 국가는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다. 중복지급의 금지 등

○ 중복지급의 금지

- 보상금·구조금은 타 법령에 따른 중복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수령은 각 보상금·구조금을 공제

- 이 법에 따라 보상금·구조금을 받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타 법령에 의한 보상금·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받은 보상금·구조금을 공제

※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구조금 등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함

○ 보상금·구조금의 환수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중복 지급된 경우

-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등

※ 미납부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참고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평가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가 방법 및 산식	비고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마련 (40)	<p>○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기반 규정 제정(20)</p> <p>- 조례·규칙·훈령 등으로 세부규정 마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조례·훈령·예규·사규 이상</td> <td>20</td> </tr> <tr> <td>▪ 지침, 운영계획, 매뉴얼, 편람 등</td> <td>10</td> </tr> <tr> <td>▪ 규정 없음</td> <td>0</td> </tr> </tbody> </table> <p>※ 조례 등 규정의 제·개정 노력도·난이도·충실도·실효성 등 기준으로 평가</p> <p>※ '13년도에 지침 제정을 완료한 기관은 '13년도 평가에 준해서 평가</p> <p>※ 공익신고 접수·처리 대상 제외 기관</p> <p>- 지침·매뉴얼 등의 형식으로 내부 규정마련 한 경우라도 해당 규정의 내용이 충실한 경우 20점 부여</p>	구 분	배점	▪ 조례·훈령·예규·사규 이상	20	▪ 지침, 운영계획, 매뉴얼, 편람 등	10	▪ 규정 없음	0	전체기관 공통지표	
		구 분	배점									
▪ 조례·훈령·예규·사규 이상	20											
▪ 지침, 운영계획, 매뉴얼, 편람 등	10											
▪ 규정 없음	0											
<p>○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제도 안내 및 신고창구 개설(10)</p> <p>- 기관 자체 신고창구를 설치하거나 권익위 등 공익신고 접수·처리 기관 홈페이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배너를 설치</p> <p>- 공익신고 방법·절차 및 제도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p> <table border="1"> <thead> <tr> <th>창구개설·제도안내</th> <th>창구개설</th> <th>미설치</th> </tr> </thead> <tbody> <tr> <td>10</td> <td>5</td> <td>0</td> </tr> </tbody> </table> <p>※ '13년도에 신고창구 개설을 완료한 기관은 '13년도 평가에 준해서 평가</p> <p>○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시행(10)</p> <p>- 연 2회 이상 자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시행</p> <table border="1"> <thead> <tr> <th>2회 이상</th> <th>1회</th> <th>미실시</th> </tr> </thead> <tbody> <tr> <td>10</td> <td>5</td> <td>0</td> </tr> </tbody> </table>	창구개설·제도안내	창구개설	미설치	10	5	0	2회 이상	1회	미실시	10	5	0
창구개설·제도안내	창구개설	미설치										
10	5	0										
2회 이상	1회	미실시										
10	5	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벌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벌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와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

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

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

제26조(보상금) 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 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0472호, 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